

교육만족도향상위원회 규정

제1조(목적) 교육만족도향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한다)의 목적은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 공함으로써 학생의 교육만족도 향상에 따라 재학률 향상과 탈락률 감소 효과를 얻기 위하여 운영한다.

제2조(구성) ① 위원회는 학사부총장, 단과대학장, 교무처장, 기획처장, 교육혁신처장, 인재개발처 장, 학생처장, 총학생회장을 당연직으로 하고, 외부 및 내부 전문가를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 과 1인의 간사를 둔다.(개정 2020. 3. 16.)

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학사부총장으로 하며, 부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한다. 당연직 위원을 제 외한 나머지 위원은 각 단과대학 및 학문영역을 대표할 수 있는 전문가 중,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간사는 교무처 학사팀장으로 한다.(개정 2020. 3. 16.)

③ <삭제 2020. 3. 16.>

제3조(기능)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(개정 2020. 3. 16.)

1. 교육만족도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
2. 교육만족도 향상을 위한 의견 수렴
3. 학기별 교육운영에 대한 자체 평가 및 의견 수렴
4. 장기결석자 관련 대책 협의
5. 재학률 및 탈락률 대책
6. 기타 학생 교육만족도향상을 위한 정책 건의

제4조(회의)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적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(개정 2020. 3. 16.)

② 위원회 회의는 학기별 1회 이상으로 개최한다.(개정 2020. 3. 16.)

제5조(회의록) 회의 내용을 간사가 기록하여 관리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경과규정) ① 이 규정 이전에 시행한 “재학률향상위원회”의 명칭을 “교육만족도향상위원회” 로 바꾸고 이 규정으로 시행한 것으로 본다.

② 이 규정은 2018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0. 3. 16.)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.